

「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」 시제품 실증지원 대상 과제 공고

「2026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」 시제품 실증지원의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7일

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경기도에 소재한 팹리스 중소·중견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 또는 제품의 실증 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양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

□ 사업 범위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|---|
| 지원 대상 | 경기도에 소재한 팹리스 중소·중견 기업 |
| 지원 금액 | 과제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|
| 연구개발 기간 | 2026. 5. 1. ~ 2026. 10. 31. (과제당 최대 6개월) |
| 지원 규모 | 4개 과제 내외 |

※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의견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는 조정 가능하며, 추진 일정에 따라 연구개발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

2. 지원 내용

□ 지원 기간

- 2026. 5. 1. ~ 2026. 10. 31. (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□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: 과제당 최대 5천만 원 이내

① 혁신 기술(제품)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

- 수요(실증)기업* 및 테스트베드 활용을 통한 시제품의 실증 지원

* ‘수요(실증)기업’이란 개발되는 기술제품의 구매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기술제품의 성능평가검증을 수행하는 기업

② 기술성숙도(TRL)* 7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 가능

| 구분 | TRL1 | TRL2 | TRL3 | TRL4 | TRL5 | TRL6 | TRL7 | TRL8 | TRL9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내용 | 기본원리 발견 | 기술개념 적용분야 확립 | 분석/실험 기반 개념검증 | 연구실 환경 Working Model 검증 | 유사환경 Working Model 검증 | 유사환경 프로토타입 개발 | 실제환경 시제품 데모 |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| 상용제품 생산 |
| | 기초연구 단계 | 기술개념 도출 | 개념설계 및 시뮬레이션 | 소규모 테스트 및 설계 검증 | 엔지니어링 설계 | 프로토타입 제작/평가 | 시제품 테스트 | 상용화 준비 | 상용화 완료 |

* 개발 기술의 성숙도 또는 이행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된 측정 지표로, 연구개발 환경(실험실, 유사 환경, 실제 환경), 연구개발 결과물(시제품, 완제품), 기술 수준(개념, 시현, 성능 검증)에 따라 기술성숙도를 분류

□ 지원 분야: 자유공모

- 반도체 설계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분야

- 모바일 통신, 인공지능(AI), 자율주행차, 사물인터넷(IoT), 바이오헬스 등

※ 신청 시 ‘[별표1] 산업기술 분류표’를 참고하여 기술 분류명(소분류 등급) 기재

3. 신청자격 및 절차

□ 신청 자격

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○ 경기도에 소재한 팹리스 중소·중견 기업*

※ 사업자등록증(본사 또는 사업장),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, 공고일 기준 만 1년 이상 설치·운영 중인 기업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‘중소기업’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‘중견기업’

②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

○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수행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
□ 신청 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4.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

□ 지원 기준

- 전체 연구개발비는 경기도 지원연구개발비(현금)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 및 현물)로 구성
-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,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

①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

| 연구개발기관 유형 | 지원연구개발비 비율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견기업 |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 |
| 중소기업 |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 |

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

| 수행기관 유형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견기업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의 13% 이상 |
| 중소기업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의 10% 이상 |

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

- 기업이 참여연구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
 - ※ 중견기업의 경우 70% 이내
-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비
 - ※ 중견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물)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% 이내
-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,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

④ 인건비 현금 지급 허용 범위 (예외적 인정)

- 참여연구원(연구책임자 포함)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
- 단, 아래의 기준에 따라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도지원금의 10% 범위에서 현금 계상 허용
 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*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- *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 포함
 - 창업기업**의 경우,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

**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(법인, 개인사업자 포함), 사업을 개시한 날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,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말함

※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, 애초 계획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

5. 평가 절차 및 선정 기준

□ 평가 절차

- (사전검토) 신청시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,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 - 공고내용과의 부합성, 기개발/기지원 여부,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참여제한 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
- (평가단 구성) 연구개발사업의 취지,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내외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(예정)
- (서면평가)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, 사업성 및 실증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서면평가

□ 평가 기준(안)

| 평가 항목 | 평가 지표 | 평가 내용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사업목적 부합성 (20) | 지원 시급성 |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| 10 |
| | 목표 적정성 | 연구개발과제 목표와 본 사업 목적의 연관성 | 10 |
| 기술성 (30) | 혁신성 | 기존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혁신 기술의 적용 정도 | 10 |
| | 완성도 | 이미 확보한 보유 기술의 완성도(TRL) | 20 |
| 사업수행 역량·계획 (20) | 조직 역량 |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| 10 |
| | 사업비 사용 |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| 10 |
| 결과활용 가능성 (30) | 실증 가능성 | 실증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, 실현 가능성 | 10 |
| | 성과 창출의 지속 가능성 | 실증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| 10 |
| | 기대효과 | 실증 후 기대되는 경제적, 기술적, 사회적 효과 | 10 |
| 합 계 | | | 100 |

※ 상기 평가 항목 및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 결과

○ (평가점수)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'산술평균 점수'를 산출 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)

-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'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'로 분류하고,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'지원 제외'로 분류함

※ 단,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(우대 기준) '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'에만 적용하고, 평가점수에 최대 5점 까지 가점을 부여함

| 가점항목 | | 가점 | 비고 |
|------|---|----|------------|
| 유형1 | ① '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'인 경우 | 2 | 가점은 1건만 적용 |
| | ② '경기도 유망 중소기업'인 경우 | | |
| 유형2 | ①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※ 실적별 기술이전 중개 확인서 및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(원본 대조필 필수) | 3 | 가점은 1건만 적용 |
| |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2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※ 수출신고필증, 수출실적증명서 (원본 대조필 필수) | | |

※ 가점 적용은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기관에만 적용

○ (감점 기준)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, 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」에 따라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다음의 11개 관련 법 위반 사실 확인 시(1회 이상) 평가점수 총점의 20% 감점을 적용

| 구분 | 법률 |
|----|---|
| 공정 |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 |
| 노동 |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 |
| 환경 |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·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 |
| 납세 |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 |

※ 단,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(이미 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 예정행위)에 해당하는 경우 「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(서식11)」 제출 시 감점 미적용

※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는 [서식9] 참조

○ (최종선정) 평가점수에 우대·감점을 반영하여, 상위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

- 평가 결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,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,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, 1회만 가능
- ※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,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

□ 사전지원제외 대상

-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 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 작성, 명의도용, 대리 발표 등 부정행위 확인 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주관연구개발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, 선정 취소 가능

① 기관 자격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의 접수 마감일까지 1년 미만인 중소·중견기업
 -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참여제한(최소 사업영위기간 1년)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예외로 함
- ※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,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개인기업의 사업 기간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사업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
 - 동일업종(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)을 계속 영위할 것
 -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(사업의 양수·양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) 되어 있고,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, 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있을 것
 -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것
 -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
- ※ 단, 사업기간의 연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만 함
 - 포괄양수·양도계약서
 - (舊)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
 - (新)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
 - (新)법인기업 등기부등본(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

② 접수 서류

-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 서류 미제출 및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③ 수행 과제 수

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(3책 5공)임. 다만,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
 -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 - 사전 조사, 기획·평가 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 - 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 -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
 -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
 -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 양성 및 학술 활동 사업

④ 과제 중복성

- 신청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(기지원, 기개발)이 인정된 경우
 - 단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
 -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
 -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“중단(성실, 불성실)”이나 “불성실수행”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
- ※ 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://www.ntis.go.kr>) 접속 → ② 과제참여관리 메뉴 클릭 → ③ 차별성검토 선택 → ④ 차별성검토시작하기(이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)
 - 기준차별성 ‘40(유사도:60)’ 수치는 본 과제의 유사도 점수가 아니라 NTIS 측의 내부적인 검증 기준 점수이며, 60% 이상 유사성이 있으면 하단의 유사과제 건수가 출력됨
 - 차별성검토 검색결과 ‘웹보기’를 클릭하여 유사과제 건수에 ‘0’이 표기되거나 ‘검색결과증’을 클릭하여 결과요약의 차별성 검토필요 과제수에 ‘0건’이 표기되면 중복성이 ‘없음’으로 판단

⑤ 인건비 계상률

-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%를 초과한 경우
 -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 (단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20% 이상 계상)

⑥ 의무사항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,

기술료 납부,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,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,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
⑦ 신용 및 기업 상태

-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(체납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- (채무불이행)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,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채불사업자 포함)로 등록된 경우
-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경우
-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(완전자본잠식) 기업인 경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기업
-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)
 - ※ 단,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
 -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“CCC” 이상인 경우
 -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“CCC” 이상인 경우
 -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
 - 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 - ※ 위의 신용등급 “CCC”에는 “CCC+”, “CCC”, “CCC-”를 모두 포함함

⑧ 기타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
- 기타 본 사업 목적 및 지원 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6. 신청 방법

□ 신청 기간

○ 2026. 3. 17.(화) ~ 2026. 4. 10.(금) 18:00 (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)

□ 신청 방법

○ 전자우편 접수

○ 접수처: sshfish85@snu.ac.kr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

※ 파일명: 실증지원_기업명 (예) 실증지원_(주)○○○○.zip

□ 구비 서류

| 순번 | 제출 서류 | 부수 | 서류유형 | |
|----|---|----|------|-----|
| | | | 필수 | 해당시 |
| 1 | 연구개발계획서 ※ 연구개발계획서 첫 페이지 및 서식 등 직인이 포함된 부분은 직인 날인하여 스캔 후 한글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| 1부 | ○ | |
| 2 |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(기관장) 정보활용 동의서 | 1부 | ○ | |
| 3 |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 | 1부 | ○ | |
| 4 |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| 1부 | ○ | |
| 5 |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| 1부 | ○ | |
| 6 |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| 1부 | ○ | |
| 7 | 연구시설·장비 임차 활용계획서 | | | ○ |
| 8 |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 1부 | ○ | |
| 9 | 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| 1부 | ○ | |
| 10 | 이의 및 구제 신청서 | 1부 | | ○ |
| 11 | 기업의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| 1부 | | ○ |
| 12 | 사업자등록증명원 ※ 사업자등록증 불가 ※ 공고일(2026. 3. 17.) 이후 발급분 제출 | 1부 | ○ | |
| 13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1부 | ○ | |
| 14 |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| 1부 | ○ | |
| 15 | 국세 완납증명서 | 1부 | ○ | |
| 16 | 지방세 완납증명서 | 1부 | ○ | |
| 17 | 가산점 증빙서류 | | | ○ |
| 18 | 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| | | ○ |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.

□ 유의 사항

- 접수 마감 결과 또는 평가 결과, 모집 분야별 적격 업체 수 미달 시 재공고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, 연구개발기관(기관, 기관별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)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
- 과제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- 과제 선정 후 과거(공모일 이전)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, 도지원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-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「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(서식12)」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 취소, 도지원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-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
 -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도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체결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 - 수수료는 선결제 후 연구비(연구활동비)로 소급 가능
- ※ 보험기간은 협약 이후 안내 예정
- 선정 이후 지원 과제의 도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
-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(RCMS) 적용
 - 본 사업은 RCMS 적용 대상 사업으로, 연구개발비는 RCMS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,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 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(사업비 전용 카드)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
- 과제의 중간 탈락
 - 과제 수행 중 평가(점검)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,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 제한 및 도지원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
-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미징수 대상임

7. 근거 법령 및 규정

-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운영규칙 (2025. 10. 15.)
-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(2025. 10. 15.)

8. 문의처

□ 사업 문의

| 전문기관 | 연락처 | E-mail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경기도 반도체혁신센터 반도체기술혁신팀 | 031-888-9110 | sshfish85@snu.ac.kr |
| | 031-888-9591 | kb1524@snu.ac.kr |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바랍니다.